법제처	보 도 자 료	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	
보도 일시	2021. 12. 28.(화) 10:00	배포 일시	2021. 12. 28.(화) 10:00
담당 부서	법제정책국 법제정책총괄과	책임자	과 장 김 진 (044-200-6561)
		담당자	사무관 송하정 (044-200-6565)

2021년도 적극행정 법제 우수사례 8건 선정

- 코로나19 등 재난 극복을 위한 특허 우선 심사 도입 등 선정 -

□ 올 6월부터 시행된 「특허법 시행령」에 따라,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경우라면 특허청장이 특허 우선 심사 대상을 추가로 공고할 수 있다.

○ 이 시행령은 예기치 못한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서 신속한 특허 심사가 필요한 경우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특허청이 입안했다.

□ 법제처(처장 이강섭)는 국가적 재난극복을 위한 특허 우선 심사제 도입 등 8건의 사례를 2021년 적극행정 법제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.

< 적극행정 법제 주요 우수사례 >

① **[법령입안] 유연한 입법방식- 분류체계 유연화 사례**
코로나19 등 국가적 재난극복에 필요한 경우 특허청장이 특허 출원 우선 심사 대상을 지정하여 공고할 수 있는 근거 마련(특허청)

② **[법령정비] 국민불편 법령 정비 사례**
코로나 19 확산으로 현장공연이 온라인으로 전환된 경우 등을 예술인 복지 제도 참여 요건이 되는 예술활동 실적으로 인정(문화체육관광부)

③ **[법령해석] 침익적 요건의 확대해석 금지 사례**
건설현장 내 가설 건축물에서의 일반음식점 및 집단급식소의 영업 허용 (대전광역시 유성구)

□ 법제처는 2020년부터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에 단단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 공무원들이 법령의 입안·정비, 해석 등 법제업무를 하면서 적극행정을 실천한 사례를 발굴해 왔다.

○ 올해도 중앙부처,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총 268건의 적극행정 법제 실천사례를 발굴했고, 그 중 우수사례 8건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.

□ 법제처는 28일 특허청, 대전광역시 유성구 등 우수사례 선정기관의 정책 담당자와 간담회도 가진다.

○ 이날 간담회에서는 정책 담당자들이 해당 정책을 추진하면서 현장에서 겪은 생생한 경험과 지식을 나눌 예정이다.

□ 법제처 최영찬 법제정책국장은 “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국민들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”면서,

○ “법제처는 모든 공무원이 적극행정 법제를 펼칠 수 있도록 다가오는 2022년도에도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법제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밝혔다.

붙임 : 2021년도 적극행정 법제 우수사례 선정 결과

붙임 **2021년도 적극행정 법제 우수사례 선정 결과**

○ **(대상)** 2021년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① **법령입안** ② **법령정비** ③ **법령해석** 등 **3개 분야 적극행정 법제를 실천한 사례**

○ **(선정결과)**

연번	유형	대상		주요 내용
1	법령 입안	중앙	특허청	**유연한 입법방식- 분류체계 유연화·하위법령 활용** **▪ 코로나19 등 국가적 재난극복에 필요한 경우 특허 우선 심사** - 코로나19 등 국가적 재난 극복에 필요한 특허를 조속히 심사할 수 있도록 다른 출원에 우선하여 처리하는 우선심사 대상(의료·방역물품이나 재난안전제품 등)을 규정함. - 우선 심사 신청 대상을 특허청장이 추가로 지정(공고)할 수 있도록 하여 예기치 못한 다양한 재난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
2		중앙	질병 관리청	**유연한 입법방식 – 하위법령 활용** **▪ 감염병의심자의 격리 기간 종료일을 탄력적으로 조정** - 종전에는 제1급 감염병의심자의 자가·시설격리 기간 종료일이 최대잠복기 종료일로 일괄 규정되어 있었음. - 예방접종 진행 등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질병관리청장이 최대잠복기 내에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
3	법령 정비	중앙	보건 복지부	**국민불편 법령 정비** **▪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시 요양급여 적용 절차 개선** - 희귀·난치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익적 임상연구인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에 대해 연구계획 승인 요청 시 치료비 지원을 위한 요양급여를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통합* * 통상 계획승인→ 요양급여 신청 → 적용결정 절차 순차 진행 - 관련 연구 편의 제고 및 신속한 치료비 지원을 뒷받침
4		중앙	문화 체육 관광부	**국민 불편 법령 정비** **▪ 코로나19 상황을 고려, 온라인 예술 활동 실적 인정** - 재난 또는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 발령에 따라 현장 공연이 온라인으로 전환된 경우 등을 예술인 복지제도 참여 요건이 되는 온라인 예술 활동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.

5		중앙	고용 노동부	**국민불편 법령정비** ▪ **외국인근로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사업장 변경 시 재입국 특례를 위한 잔여 근로계약 기간(1년) 요건 예외인정** - 종전에는 외국인근로자의 재입국 특례 인정을 위한 잔여 근로계약 기간(1년 이상) 요건으로 인해 근로자 폭행 등의 경우에도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을 변경하기 곤란하였음. - 부당한 처우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재입국 특례 인정을 위한 잔여 근로계약 기간(1년 이상) 요건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외국인근로자 근로조건을 개선함.
6		지방	통영시	**차별법령 정비** ▪ **시립소년소녀합창단 단원 자격 중 "재학" 요건 삭제** - 종전에는 시립소년소녀합창단 단원 자격을 초·중·고교 재학생으로 제한하고 있어 여건상 홈스쿨링, 검정고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학업 등을 수행하고 있는 지역 청소년의 참여가 불가능하였음. - 이러한 재학 요건을 삭제하여 지역 내 청소년에 대한 지방문화 예술 참여 기회를 확대함.
7	법령 해석	중앙	보건 복지부	**입법공백 시 국민 편익 확대 해석** ▪ **긴급한 감염병 방역을 위해 유통단계별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의무 생략 근거 마련** - 종전에는 의약품 공급·유통 시 최소포장단위마다 일련번호 표기 및 유통단계별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보고가 의무화되어 있었음. - 코로나19 백신공급과 관련하여 신속한 의약품공급이 요구됨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의약품을 공급하는 경우 등은 최소포장단위 표기 의무 등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해석 후 법령상 근거를 마련함.
8		지방	대전 광역시 유성구	**침익적 요건의 확대해석 금지** ▪ **건설현장 내 가설건축물에서의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허용** - 일반음식점영업신고 및 집단급식소 설치·운영신고의 경우 식품위생법령상 조리장, 급수시설 등 시설요건 등을 갖춰야 하지만 「건축법」상 건축물인지 여부는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음. - 공사 중인 건축현장 등의 공사용 가설건축물도 식품위생법령상의 다른 신고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라면 신고된 내용에 따라 영업 등이 가능하도록 해석하여 건설근로자 등 관련 업종 근로자의 불편을 해소함.